

2001. 10.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產業建設委員會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수도급수조례 증개정조례안	2001. 10.16	10.17	10.22	10.22	상수도사업 소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일부조항을 개정·삭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○ 상수도요금인상조정

- 판매요금 : 469.5원/톤  $\Rightarrow$  544원/톤  
(현재 총괄원가 572.6원/톤의 95% 수준으로 인상)
-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 보상 등 규제 완화
  -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 발생시 충주시수도급수 공사대행시행규칙을 적용
  -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"(제25조 제3항)을 삭제
  - 수도계량기시험 결과에 따라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계량기 교체 및 수리의 책임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95. 1. 14. 조례 제9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00. 9. 28일 조례 제484호로 수도요금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수도사용요금을 총 원가의 95% 수준으로 금회에 15.9%를 인상하여 제정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함.
- 급수공사시 신청인의 공작물에 손해 발생시 등 조례 제18조 제4항 규정은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충주시수도급수 공사대행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조례 제18조 제4항은 삭제됨이 타당하며
  - 같은조례 제25조 제3항 규정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시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
  - 같은조례 제32조 제3항 개정은 수도계량기 시험결과에 따라 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계량기 교체 및 수리의 책임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.답변 요지

- ▶ 질의 : 계량기 교체비가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고지되는지?  
○답변 : 계량기 교체비는 별도 징수함.
- ▶ 질의 : 계량기 동파시 무료로 교체하는지?  
○답변 : 계량기 값만 받고 교체해 주고 있음.
- ▶ 질의 : 이번에 95%까지 인상시 연간 결손액은?  
○답변 : 년 4억정도가 예상됨.
- ▶ 질의 : 광역상수도 공급시 생산원가는?  
○답변 : 270원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▶ 질의 : 이번에 생산원가에 맞추어 100%까지 올릴 예상은?

○답변 : 한꺼번에 인상시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내년에 검토할 것임.

▶ 질의 : 급수지역이면서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이 급수 신청시 대책은?

○답변 : 시설비가 많이 들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.

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6. 붙 임

충주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. 끝.